

《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1. 예산안총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2월 19일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12월 26일
- 다. 상 정 일 자 : 제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7)
상정심사(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세입예산은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초생활보장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 1,000억 5,880만 3천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계	100,058,803	계	100,058,803
지 방 세	19,249,000	일 반 행 정 비	31,264,857
세 외 수 입	22,390,709	사 회 개 발 비	55,331,323
지방교부세	2,264,800	경 제 개 발 비	8,554,547
조정교부금	17,272,646	민 방 위 비	408,720
보 조 금	38,881,648	지 원 및 기 타	4,499,356
지 방 채	-		

- 특별회계 ▷ 388억 1,762만 4천원

- 의료보호기금 ----- 188억 7,182만 6천원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 9억 5,110만 7천원
- 주 차 장 ----- 71억 161만 4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22억 5,344만 9천원
- 장림유수지이설및매립사업 ----- 19억 5,822만 1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76억 8,140만 7천원

3.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1회추경예산	증 감	
			금 액	증감율(%)
총 계	138,876,427	127,526,271	11,350,156	8.90
일 반 회 계	100,058,803	92,807,743	7,251,060	7.81
특 별 회 계	38,817,624	34,718,528	4,099,096	11.81
의료보호기금	18,871,826	11,368,815	7,503,011	66.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51,107	951,107	-	-
주 차 장	7,101,614	6,728,776	372,838	5.54
주거환경개선사업	2,253,449	2,253,449	-	-
장림유수지이설사업	1,958,221	1,928,221	30,000	1.5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681,407	11,488,160	△3,806,753	△33.14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100,058,803	100	92,807,743	100	7,251,060	7.81
지 방 세	19,249,000	19.24	18,690,000	20.14	559,000	2.99
세 외 수 입	22,390,709	22.38	21,998,781	23.70	391,928	1.78
경상적세의수입	10,180,998	10.18	10,216,610	11.01	△35,612	△0.35
임시적세의수입	12,209,711	12.21	11,782,171	12.70	427,540	3.63
지 방 교 부 세	2,264,800	2.26	40,000	0.04	2,224,800	5562.00
조 정 교 부 금	17,272,646	17.27	16,204,348	17.46	1,068,298	6.59
보 조 금	38,881,648	38.86	35,874,614	38.65	3,007,034	8.38
국고보조금	25,079,026	25.06	22,792,450	24.56	2,286,576	10.03
시비보조금	13,802,622	13.79	13,082,164	14.10	720,458	5.51
지 방 채	-	-	-	-	-	-

□ 세출예산내역

○ 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액	증감율(%)
계	100,058,803	100	92,807,743	100	7,251,060	7.81
일반 행정	31,264,857	31.24	31,804,745	34.27	△539,888	△1.70
사회 개발	55,331,323	55.30	51,099,763	55.06	4,231,560	8.28
경제 개발	8,554,547	8.55	7,263,587	7.83	1,290,960	17.77
민방 위비	408,720	0.41	395,026	0.43	13,694	3.47
지원 및 기타	4,499,356	4.50	2,244,622	2.42	2,254,734	100.45

○ 성질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액	증감율(%)
계	100,058,803	100	92,807,743	100	7,251,060	7.81
경상 경비	36,049,259	36.03	37,443,487	40.35	△1,394,228	△3.72
사업 예산	58,836,263	58.80	52,382,046	56.44	6,454,217	12.32
채무 상환	211,000	0.21	241,000	0.26	△30,000	△12.45
예비비 등	4,962,281	4.96	2,741,210	2.95	2,221,071	81.03

○ 품목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액	증감율(%)
계	100,058,803	100	92,807,743	100	7,251,060	7.81
인건비	20,891,500	20.88	20,755,428	22.36	136,072	0.66
물건비	11,314,604	11.31	11,828,050	12.74	△513,446	4.34
이전 경비	40,896,083	40.87	39,647,150	42.72	1,248,933	3.05
자본지출	21,993,959	21.98	17,899,192	19.29	4,094,767	22.88
보전재원	175,000	0.17	175,000	0.19	-	-
내부거래	499,301	0.50	499,301	0.54	-	-
예비비 및 기타	4,288,356	4.29	2,003,622	2.16	2,284,734	114.03

□ 주요 증감 내용	-----	7,229백만원
○ 필 수 경 비	-----	△976백만원
○ 국·시비보조사업	-----	3,242백만원
○ 경 상 사 업 비	-----	△715백만원
○ 자 산 취 득 비	-----	11백만원
○ 투 자 사 업 비	-----	3,368백만원
○ 예 비 비	-----	2,299백만원

□ 명시이월사업내역(12건) ----- 3,347백만원

○ 구청사 제2별관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	-----	210백만원
○ 공 공 근 로 사 업	-----	517백만원
○ 버스승강장 설치 (8개소)	-----	56백만원
○ 신평2동 신남초교 ~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	-----	590백만원
○ 낙동로 ~ 괴정천간 도로개설	-----	59백만원
○ 괴정3동사 ~ 북개도로간 도로개설	-----	44백만원
○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개설	-----	500백만원
○ 감천1동 57번지 일원 도로개설	-----	300백만원
○ 하단1동 남도궁궐 아파트앞 도로개설	-----	158백만원
○ 구평 대림아파트 ~ 항만배후도로간 도로개설	-----	20백만원
○ 도로굴착 복구비	-----	753백만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	140백만원

3.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임 시 적 세 외 수 입	국 고 보조금	시 비 보조금
계	예 산 액	38,817,624	2,443,171	16,159,110	16,049,375	4,165,968
	제1차추경예산	34,718,528	2,342,333	19,663,863	10,047,927	2,664,405
	증 감 액	4,099,096	100,838	△3,504,753	6,001,448	1,501,563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18,871,826	2,000	33,483	15,064,375	3,771,968
	제1차추경예산	11,368,815	2,000	33,483	9,062,927	2,270,405
	증 감 액	7,503,011	0	0	6,001,448	1,501,563
주 차 장 외 5건	예 산 액	19,945,798	2,441,171	16,125,627	985,000	394,000
	제1차추경예산	23,349,713	2,340,333	19,630,380	985,000	394,000
	증 감 액	△3,403,915	100,838	△3,504,753	0	0

○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 상 예산	사 업 예산	예 비 비 등
계	예 산 액	38,817,624	993,234	32,484,626	5,339,764
	제1차추경예산	34,718,528	1,006,089	28,758,622	4,953,817
	증 감 액	4,099,096	△12,855	3,726,004	385,947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18,871,826	0	18,836,343	35,483
	제1차추경예산	11,368,815	0	11,333,332	35,483
	증 감 액	7,503,011	0	7,503,011	0
주 차 장 외 5건	예 산 액	19,945,798	993,234	13,648,283	5,304,281
	제1차추경예산	23,349,713	1,006,089	17,425,290	4,918,334
	증 감 액	△3,403,915	△12,855	△3,777,007	385,947

□ 명시이월사업내역(4건) ----- 9,711백만원

- 을숙도 문화회관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 400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 괴정1,2, 감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1,335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 장림1동사 신축 ----- 396백만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
- 감천1동 복지회관건립외 2건 ----- 7,580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 검토의견

가. 예산안총괄

-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8억 7,642만 7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00억 5,880억 3천원, 의료보호기금등 6개 특별회계 388억 1,76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 5,880만 3천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16억 3,970만 9천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억 6,480만원, 조정교부금 172억 7,264만 6천원, 국·시비보조금이 388억 8,164만 8천원등으로 편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7.81%인 72억 5,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인 재산세 1억 2,900만원과 종합토지세 3억 2,600만원, 면허세 및 사업소세 2억 4,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과년도 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원과 하천사용료 2억 1,100만원이 각 감소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4,963만 4천원)등 수수료 수입이 1억 9,664만 6천원 증가 하였으며, 시세 징수 교부금이 1억 4,648만 9천원 증가 하였으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8,205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도로굴착 원안자 부담금 수입이 3억원 증가 하였고 환경 및 폐기물, 자동차 검사등 과태료 수입이 1억 4,454만원 증가 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2억 6,480만원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10억원, 신남초등교~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 도로 개설비 5억원, 감천1동 57번지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에 투입될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 조정교부금 10억 6,829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국고보조금 22억 8,657만 6천원과 시비보조금 7억 2,04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중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 8,569만 6천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593만 6천원은 실업 대책비로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8억 933만원, 경로연금 1억 9,864만 3천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장비 5천만원, 기타 가정위탁 양육비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생계비등 저소득주민 보호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 시비 보조금으로는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8,553만 7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2억 5,824만 7천원, 노인교통비 1,687만 6천원등으로 사회보장 지원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 5,880만 3천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12억 6,485만 7천원, 사회개발비 553억 3,132만 3천원, 경제개발비 85억 5,454만 7천원, 민방위비 4억 87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 9,935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질별로는 경상적경비인 공무원 봉급과 일용 인부임등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 기준경비등은 감소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 기반시설등 투자사업비에 33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등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산불 감시인부임 8,300만원, 이전경비인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2억원등이 감소되었고 을숙도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6억 1,647만원등 자본지출은 증가 되었으며, 일부 투자사업을 제외한 일반운영경비와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과 시행중인 투자사업비등을 가감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 10억원, 신남초등교~신익아파트간 도로 개설비 4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 감천1동 57번지일원 도로개설비 3억원등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5,600만원, 을숙도 체육시설 부지매입등은 주민 편의와 불편해소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2002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33억 4,660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 별로는 구청사 2별관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1,657만 2천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장과 하단1동 남도 궁궐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등 12건이 시행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으로 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어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야 하나 주민편의등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겠습니다.

다.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88억 1,762만 4천원으로 40억 9,909만 6천원 11.8%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5억 301만 1천원 증액되어 188억 7,182만 6천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 7,283만 8천원 증액된 71억 161만 4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38억 675만 3천원 감액된 76억 8,140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용자지원에 사용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초과수입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예비비에 가감정리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사업지연으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을숙도 문화회관입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괴정1,2, 감천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림1동사 신축, 감천1동 복지회관건립등 4건 97억 1,142만 3천원으로 주민협의 및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겠습니다.
- 끝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등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정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 과부족분과 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사업예산 집행잔액등을 삭감하고 경상적 절감 부분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으나, 예비비 22억 8,693만 4천원 추가 계상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용액 발생 억제등으로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6조의 본 추경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29조 예산 총계 주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 의결되어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 함으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 원안의결
-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 원안의결
- 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 원안의결
-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 원안의결